

# 일반공급 청약안내

## ■ 일반공급(1순위)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지역 또는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및 전라남도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 청약과밀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1)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 이상 자녀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2) 세대주일 것
  - 3)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4)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일반공급 입주자 지속 순위별 자격조건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1순위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점제 75%, 추첨제 25%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점수)</li>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남영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li> </ul>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li>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 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li> <li>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li> <li>청약신청 시 모두 추첨제로 접수되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함.</li> </ul>

### 추첨제 우선공급

-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청약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 청약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외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한 자로 한정)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무주택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 일반공급 입주자 지속 지역별 예치금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분양일정 안내

GRAND OPEN	특별공급	1순위(해당지역)	1순위(기타지역)	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	정당계약
1월 8일(금)	1월 18일(월)	1월 19일(화)	1월 20일(수)	1월 21일(목)	1월 27일(수)	2월 8일(월) ~ 2월 10일(수)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총점 3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자</li> <li>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제2호의 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li> <li>-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부모, 장남·장녀, 사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 자녀 등)</li> </ul> </li> <li>•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li> <li>※ 배우자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의 혼인 기간 내 해당</li> <li>•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통장 가입자 연령 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선정함.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 산정(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li> <li>-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정점수는 “0”점임.</li> <li>-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li>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됨.</li> <li>- 소청·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li> </ul> </li> </ul>
② 부양가족 인정 적용기준 (총점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li> <li>※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됨</li> <li>※ “분양권 등” : 2018.12.11. 이후 공급계약(단,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주택에 한함) 또는 매매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li> <li>※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면 가능</li> </ul> </li> <li>•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li> <li>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됨</li> <li>-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됨</li> <li>※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ul>
③ 입주자지속 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지속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지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li> <li>2) 입주자지속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li> </ul>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및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르, 단,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6호를 적용하지 않음.</li> </ul>

## ■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자에 한함</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2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li>※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 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li> <li>(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li>■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지속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 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무모특별공급 제외)						
※ 청약신청시 청약홈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해서 사전 서류 접수 통사를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청약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청약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지침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청약자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필수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0	청약통장승인서(가입 확인서)	본인	·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입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이행으로 부터 순회(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승인서(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공용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신분증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등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함 (본인사실확인서 제출하나 본인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인사진은 불가)
	0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 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근로확인서(재직증명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0	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0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 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경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주 인정(한부모가족으로 5년) 경과된 경우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0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출생사실확인서 제출하나 본인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인사진은 불가
	0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청약 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증빙서류)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확인된 경우
	0	기본증명서	자녀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배우자 또는 해당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또는 해당자	· 임양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피부양 직계존속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비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신청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제3차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청약 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증빙서류)
	0	소득세납부인증서류	본인	· 동일자 5개년도 서류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장